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가단1528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1.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

2.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1. 3. 10.

판 결 선 고 2021. 5. 12.

주 문

1. 가. C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는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19. 대구지방 법원 포항지원 등기와
접수 제543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가. C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C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31.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117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4. 7. 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 296,000,000원, 보증기한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이후 2019. 12. 27.로 변경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17. 8. 4. 소외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한 2017. 8. 4.부터 2018. 8. 3.까지(이후 2020. 1. 31.로 변경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이하 '이 사건 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보증금액 68,000,000원(이후 64,6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7. 8. 4.부터 2018. 8. 3.까지(이후 2020. 7. 31.로 변경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이하 '이 사건 3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E은행으로부터 370,000,000원, 이 사건 2, 3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185,000,000원을 각 대출 받았다.

나. C의 연대보증

C은 이 사건 1 내지 3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소외 회사는 2019. 9. 3. E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의무를 지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12. 13. E은행에 301,892,102원(원금 296,000,000원 + 이자 5,892,102원)을, 2019. 11. 29. 기업은행에 148,460,99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C과 피고들 사이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C은 2019. 8. 16.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9. 8. 19. 피고 A 앞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C은 2019. 7. 3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이 사건 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1, 2 각 부동산이고, 소극재산은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110,380,000원, F은행에 대한 채무 13,000,000원, G은행에 대한 채무 28,500,000원, E은행에 대한 채무 88,800,000원, 기술신용보증에 대한 채무 1,485,000,000원, H에 대한 채무 60,000,000원, 한국무역보험에 대한 채무 264,717,000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116,550,000원, I에 대한 채무 39,293,000원, J은행에 대한 채무 470,000,000원, 원고에 대한 채무 450,353,094원 등 적어도 합계 5,324,767,094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K기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19. 8. 16.경 및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19. 7. 31.경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당시 이 사건 1 내지 3 각 신용보증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C은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및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인 2019. 9. 3.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으며, 원고가 소외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의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C의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합계

587,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1, 2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5,324,767,09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정당한 채무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A

피고 A는, C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다 금액이 많아져서 2019. 2. 18.자 대여금 98,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가 C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C에게 대여금 상당의 책임재산이 증가한 것이어서,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발생한 C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C의 책임재산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B

피고 B는 소외 회사와 선어음으로 결재를 한 후 코일을 납품 받아왔는데 2019. 6. 27. 결제한 452,870,000원에 대한 코일을 공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선어음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피고 A

C과 피고 A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A는 C에게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과 피고 B 사이에 2019. 8. 19. 체결된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아

(별지1)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도로명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119.0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 23049.2㎡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23049.2분의 51.98

(별지2)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월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59.7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 59968.2㎡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59968.2분의 34.958

